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 의 자 : 정희용·강대식·박충권
김선교·고동진·최수진
박준태·송석준·유용원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부과하면서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,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, 환경의 보전·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課稅對象과 稅率) ① · ② (생 략)	第2條(課稅對象과 稅率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, 에너지 및 자원 관 련 사업, 환경의 보전·개선사 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(<u>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</u> 분의 50)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조정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2027년 12월 31일-</u> ----- ----- -----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